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9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김남희 · 이학영 · 박희승

김선민 · 백혜련 · 한정애

허종식 · 서영석 · 이수진

전용기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 · 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식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를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
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
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10. (생략) ② (생략)</p>	<p>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 ----- ----- ----- -----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p> <p>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